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634 발의연월일: 2022. 7. 22.

발 의 자:배준영·김상훈·최승재

조은희 • 류성걸 • 성일종

정운천 · 박정하 · 권성동

서일준 • 박수영 • 이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,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,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 만큼(8년 이상은 100분의 50)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(안 제97조의3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의3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97조의3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| 제97조의3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|
|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|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|
|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| 특례) ① |
|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 | |
|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| |
|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 | |
|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<u>202</u> | <u>2024</u> |
| <u>2년 12월 31일</u>)까지 「민간임 | <u>년 12월 31일</u> |
|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| |
|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| |
| 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 | |
|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 | |
| 택을 등록[2020년 7월 11일 | |
|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 | |
| 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 | |
| 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 | |
| 택이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| |
| 특별법」(법률 제17482호로 | |
|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| |
|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 | |
| 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 | |
| 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| |
|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 | |

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]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 그 주택(이하 이 조에 서 "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" 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9 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 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. 다만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 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| , | |
|----------------|--|
| 1.•2. (현행과 같음) | |
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 |